

계약조건과 기타 중요 주의사항

여객의 최종목적지 또는 기항지가 출발국 이외의 국가일 경우, 해당 국가의 국내구간을 포함한 전여정에 대해 몬트리올협약 또는 그 전신인 바르샤바협약 (개정 포함, 이하 「바르샤바협약」이라 한다)이라 불리는 국제협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객들을 위해 적용운임율표(tariff)에 명시된 특별운송계약을 포함한 적용협약 등이 운송인의 책임을 규정하고 제한하기도 합니다.

책임제한에 관한 주의사항

몬트리올협약 또는 바르샤바협약이 여객 운송에 적용되어 사망 또는 신체 상해, 수하물 멸실 또는 훼손, 지연 시 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몬트리올협약이 적용되는 경우의 책임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망 및 신체 상해에 대한 책임 한도액은 제한이 없습니다.
2. 수하물의 파괴, 멸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해서는 통상 여객 1인당 1,000SDR(약 1,200유로 또는 미화 약 1,470달러)로 제한됩니다.
3. 여객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통상 여객 1인당 4,150SDR(약5,000유로 또는 미화 약 6,000달러) 로 제한됩니다.

EC규칙(No.889/2002)에 따라 EC 운송인은 모든 여객 및 수하물의 항공운송 시 몬트리올협약상의 책임제한규정 적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EC 운송인 이외의 다수 운송인들도 여객 및 수하물 운송에 대해 몬트리올협약을 따르고 있습니다.

바르샤바협약이 적용되는 경우의 책임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망 또는 신체상해에 대해 헤이그의정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16,600SDR(약 20,000유로 또는 미화 약 20,000달러), 바르샤바협약(이후 개정내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만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8,300SDR(약 10,000유로 또는 미화 약 10,000달러)로 제한됩니다. 대다수의 운송인은 자발적으로 이들 책임한도를 철폐하고 있으며, 미국의 규제에 출발지, 도착지 또는 예정기항지가 미국 내 지점일 경우 책임한도액은 미화 75,000달러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2. 위탁수하물의 멸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17SDR(약20유로 또는 미화 약 20달러), 휴대수하물은 332SDR(약400유로 또는 미화 약 400달러)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3. 운송인은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여객의 운송에 적용되는 책임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운송인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수의 운송인에 의한 여객 운송에 적용되는 책임한도에 대해서는 각각의 운송인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객 운송에 어떠한 종류의 협약이 적용되든지, 탑승수속 시 수하물가액을 신고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요금을 지불함으로써 수하물의 멸실, 훼손 또는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더 높은 책임한도액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수하물의 가액이 적용책임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여행 전에 충분한 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제소기한 :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송은 항공기가 도착한 날 또는 도착되었어야 할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수하물에 관한 청구 : 위탁수하물이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수하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운송인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지연의 경우에는 위탁수하물을 처분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계약조건에 관한 주의사항

1. 국제운송, 국내운송, 또는 국제운송에 포함된 국내구간을 불문하고 항공운송을 제공하는 운송인과의 운송계약에는 본 통지, 운송인 발행 통지 또는 고객보관용지, 각 운송인의 운송약관, 관련규칙·규제·규정(이하 총칭하여 「규칙 등」이라 한다) 및 적용운임률이 적용됩니다.
2. 복수 운송인에 의한 운송 시, 각 운송인 별로 각각 다른 운송약관, 규칙 등, 적용운임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본 통지에 의하여 각 운송인의 운송약관, 규칙 등, 적용운임률은 운송계약에 포함되어 그 일부가 됩니다.
4. 운송약관은 다음 사항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사항들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여객의 신체 상해나 사망 시 운송인의 책임 조건과 한도
 - 쉽게 파손되거나 부패되는 물품을 포함한 여객의 물품이나 수하물의 멸실, 훼손 또는 지연에 따른 운송인의 책임 조건과 한도
 - 고가 수하물의 신고 및 적용될 수 있는 추가요금의 지불에 관한 규정
 - 운송인의 대리인, 고용인 또는 대표자(운송인에게 설비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행위에 대한 운송약관 및 책임한도의 적용
 - 운송인에 대한 청구신청기한 및 제소기한을 포함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제한
 - 예약확인 또는 예약, 탑승수속 시각, 항공운송 서비스의 이용, 기간과 유효성 및 운송인의 운송거부권에 관한 규정
 - 스케줄의 변경, 대체운송인 또는 대체항공기에 의한 대체운송, 경로변경을 포함한 지연, 운송채무불이행에 관한 운송인의 권리 및 책임한도, 그리고 적용법령에 근거해 필요할 경우 여객에게 운항항공사 또는 대체항공편을 고지해야 하는

운송인의 의무

- 적용법령을 준수하지 않거나 필요한 도항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여객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는 운송인의 권리
5. 운송계약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 및 사본을 항공권 판매처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운송인은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적용법령에 규정이 있을 경우, 운송인의 공항과 판매영업소에서 운송계약 전문을 열람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우편 또는 기타 배송방법을 이용하여 각 운송인으로부터 무료로 받아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6. 운송인이 다른 운송인에 의한 운송임을 명시하면서, 항공운송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수하물을 위탁할 경우 해당지역 운송인의 대리인 자격으로서만 이를 수행합니다.

여권 및 비자 등 구비서류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행을 하실 수 없습니다.

정부기관은 운송인에게 여객정보의 제공 및 여객정보에 대한 접근허가를 요청할 경우가 있습니다.

탑승하지 못하신 경우 : 초과예약(overbooking)등으로 인해 예약된 고객님의 좌석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드물게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탑승하지 못하신 고객께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용법령에 규정이 있을 경우, 운송인은 고객이 원하지 않는 탑승취소를 확정하기 전에 자발적 탑승포기자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탑승하지 못하신 경우의 모든 보상(DBC) 규칙 및 탑승 우선순위에 관한 정보는 운송인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하물 : 특정 종류의 물품은 책임한도액을 초과하여 가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송인은 파손되기 쉬운 물품, 고가의 물품 또는 변질, 부패되기 쉬운 물품에 대해 특별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운송인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탁수하물** : 운송인은 좌석 등급과 노선에 따라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각기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허용량을 초과한 위탁수하물에 대해 운송인은 초과요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운송인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내휴대수하물** : 운송인은 좌석등급과 노선, 항공기의 종류에 따라 무료 기내휴대수하물 허용량을 각기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기내휴대수하물은 최소한으로 소지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운송인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둘 이상의 운송인을 이용하는 여정일 경우, 각각의 운송인에 따라 상이한 수하물(위탁, 기내휴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국 국내구간 수하물 특별 책임한도** : 미국 국내구간에 국한된 운송의 경우 미국연방의 규칙에 따라 수하물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한도는 여객 1인당 최저 미화 3,300달러이거나 현재 14CFR 254.5에 규정된 금액입니다.

탑승수속 마감시간 : 고객보관용지에 기재된 시각은 항공기의 출발시간입니다. 출발시간은 탑승수속 마감시간 또는 항공기 탑승시간과는 **다릅니다**. 각 시간에 늦을 경우 탑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운송인이 통제한 탑승수속 마감시간이란 수속을 접수할 수 있는 최종시각입니다. 또한, 운송인이 통제한 탑승시간이란 탑승구에 도착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위험물품 : **안전상의 이유로**, 위험물품은 특별히 허가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하물로 맡기시거나 기내로 반입하실 수 없습니다. 위험물품에는 고압가스, 부식물, 폭발물, 가연성 액체·고체, 방사성물질, 산화성물질, 유독물질, 감염물질, 경보장치가 부착된 서류가방 등이 있으나, 이들로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다른 제한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운송인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험물품

운송인의 확인 없이 아래 그림과 같은 물품을 맡기시거나 기내 반입하실 수 없습니다.



고객 자신 또는 다른 고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운송인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IATA 웹사이트 www.iatatravelcentre.com/tickets를 통해 번역판 및 유익한 여행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